## 도로교통법위반(공동위험행위)·도로교통법위반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

피

[인천지방법원 2018. 2. 19. 2016고단8693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1인

【검 사】박종선(기소), 정세연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정훈

## 【주문】

1

[피고인 1]

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및 공소외 2, 공소외 3, 공소외 4, 성명불상 자, 피고인 2와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.

피고인 1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피고인 2]

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,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, 피고인 1의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및 공소외 2, 공소외 3, 공소외 4, 성명불상자, 피고인 2와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관한 범인도피의 점은 각 무죄.

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.

## 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